

중양회 소식

✦ 가축전염병을 신고하고 이동을 제한받게 되는 수의사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쾌거

지난 2011년 1월 24일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일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신고하고 이동을 제한받게 되는 수의사들이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하지 못하는데 따른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게 되었다.

현재 가축전염병을 신고한 수의사들은 14일동안 이동이 제한되어 진료를 하지못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상기준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회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왔으며, 지난 2010년 2월 19일 민주당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우리회는 동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다. 보상은 통상 관련 직군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 노동부 통계자료상 수의사의 평균소득은 1일 약 10만원, 2006년 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상 수의사의 평균소득은 1일 약 7만원으로 조사되어 있어 회원들이 원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회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전문계약직공무원 “나” 급을 기준으로 하루 약 20만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관련조문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 동원된 수의사에 대한 보수지급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 발의

지난 2011년 1월 28일 자유선진당의 이 용희의원(충북 보은 옥천 영동 지역구)께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하였다.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수의사법 제30조에 따라 동물진료 시책 상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수의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동원된 수의사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은 없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는 동원된 수의사들에게 보수를 줘야 하는지? 준다면 얼마를 줘야 하는지?에 대해 난감해 하고 있다.

동원된 수의사들도 보수를 받는 것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해당 지자체와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에 우리회는 수의사와 동물병원의 시설 및 장비를 동원한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액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

제30조(지도와 명령)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시설·장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 공동발의 의원 명단**

이용희, 윤영, 정해걸, 김우남, 임영호, 이명수, 이상민, 이상권, 신건, 김재경, 유성엽, 김효석, 송광호, 이한성, 신성범, 안홍준, 이인기, 백재현, 최규성, 화영철

✦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수의사회에 당연히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 발의

지난 2011년 1월 28일 자유선진당의 이용희의원께서 수의사법 일부 개정법안을 발의하면서 위 제목의 내용도 함께 발의하였다.

1999년 3월 31일까지는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수의회에 당연히 가입하도록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후 규제개혁완화차원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의 의료단체는 아직도 당연 가입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회도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11년 전에 개정된 법안을 원상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므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공동발의 의원 명단은 위와 동일하다.

***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

제14조(신고) 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설립) ③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수의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당연히 수의사회의 회원이 된다.

✦ 수의사 국가시험 업무지원

지난 1월 21일(금) 실시된 제55회 수의사 국가시험 출제 및 인쇄, 감독 업무 등에 대하여 지원하였다. 이번 업무지원은 구제역 및 AI 발생으로 인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가시험관련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2011년도 정기감사 실시

지난 1월 17일(월)부터 18일(화) 양일간 2011년도 정기감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 등 회무 및 재정에 대하여 감사가 진행되었다.

+ 대만수의사의 날 행사 참석

2011년 1월 6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대만수의사의 날 행사에 우리회 노천섭 사무총장과 강종일 WASAVA 조직위원장, 허주형 인천시회장, 박성오과장 등이 초청받아 다녀왔다. 노천섭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양국 수의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협조를 강화하고 한국의 구제역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 또한 강종일 조직위원장은 올해 제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소동물수의사대회에 대만수의사들이 많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허주형 인천시 회장은 지난해 자매 결연을 맺은 타이난 시 수의사회와 더욱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지부 및 산하단체소식

+ 서울지부 정기총회 개최 및 임원선출

지난 1월 30일(일)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이 있었다.

선출된 임원으로는 회장에 손은필, 감사에 박천식, 강명대, 임창규, 선출직 대의원에 김태화, 한수, 주병구, 육진엽, 이기종, 이기업 이상 6명이며 결원에 대해서는 향후 이사회에서 보선할 예정이다.

+ 부산지부 정기총회 개최 및 임원선출

지난 1월 27일(목)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이 있었다.

선출된 임원으로는 회장에 김정배, 부회장에 신병현, 이시우, 우병길, 당연직 대의원에 정철규, 선출직 대의원에 박의조, 이호식, 두은덕 이상 3명이다.

관련기관소식

+ 농식품부 방역과장 수의직으로 환원

2월 9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국 동물방역과장에 김태용 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



역검사과장이 부임하였다. 이로서 2009년 4월 30일 이후 1년 9개월 만에 전문가인 수의직이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소비안전정책국 검역정책과 장기윤과장은 유임됨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내에 수의직과장이 2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학회소식

+ 대한수의학회 긴급정책토론회개최

지난 1월 1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구제역 현황과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긴급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하고 대한수의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 한국수의과대학장협의회,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한국식품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가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사태의 현황과 대책을 짚어보고 과학기술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의제와 대안을 모색하기위해 개최되었다.

+ 한국수의영상의학연구회 총회 및 학술대회개최

지난 1월 30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스코필드홀에서 제3회 한국수의영상의학연구회(KSVMI) 총회 및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종양을 보는 또 다른 시선, 영상의학’ 라는 주제로 특강, 증례발표 및 필름판독 프로그램이 있었다. [☞](#) [☞](#) [☞](#)